0507-10703093-13393009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

0507-10703093-13393009

0507-10703093-13393009

보 험 계 약 의 체 결

1.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1%<연 7.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 라 합니다)부본 및 보험약관(이하 「약관」 이라 합니다)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별도로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①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0507-10703093-13393009

② 위 ①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4.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⑧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⑩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⑪ 위 ⑩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0507-10703093-13393009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0507-10703093-13393009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청약의 철회)

1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보 험 계 약 을 맺 은 후 의 변 경

9. (계약후 알릴 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이륜차 운전을 하게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변경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위 3과 같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낮을 때에는 차액 보험료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0. (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 종목
② 보험 기간
③ 보험료 납입주기
④ 보험가입금액
⑤ 계약자 및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⑥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위 1의 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

0507-10703093-13393009

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위 1의 ④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4 계약자가 위 1의 ⑤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계약자가 위 1의 ⑤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11.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 1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12.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주기)

1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0507-10703093-13393009

②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연 6.5%>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14.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15.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 신청한 경우 32.에 규정된 계약자 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위 ①및②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15.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아래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

0507-10703093-13393009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해지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1%<연7.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1., 4. 및 6.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17.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9.의 ①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0507-10703093-13393009

3 위 2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위 2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9.의 3 또는 4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손해가 위 2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위 3 및 4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8.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계약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위 1 이외의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별표2】(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17.의 2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별표2】의 해약환급금 중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로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은 연 4%로 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경과기간	적용이율
1년 미만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5.0%
2년 미만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4.0%
2년 이상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3.0%

0507-10703093-13393009

20.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3.0%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21. (환급금 등의 이자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19. 및 20.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 부터 3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1%<연7.5%>의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중도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 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려드린경우 만기환급금과 19.(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의 ③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적용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①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 후 부터는 환급금 청구일까지는 1%를 연단위 복리로 적용합니다.

손 해 의 발 생

0507-10703093-13393009

22. (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3.(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7대질병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등)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 해 의 보 상

24. (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후유장해 지급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상해 사망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중 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3 위 1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1】 (후유장해 등급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적용합니다.

② 위 ①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③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③을 적용하고 그 지급율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음주· 무면허 운전중 상해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정한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말합니다

25.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가 생긴때에는 24.(사망보험금)의 3을 적용한 후유장해 지급율이 80%미만인 경우 그 지급율을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중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고 그 지급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의 20%를 곱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6.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은 사망보험가입금액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80% 미만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7. (보험금 등의 수령방법의 선택)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0507-10703093-13393009

② 위 ①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1%<연7.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28.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23.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①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위 ①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9.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30.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3.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3.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된 경우에도 위 ①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31.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 일 때

0507-10703093-13393009

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 이상이거나 회사가 24.에 정한 사망보험금율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피보험자가 80%이상 후유장해 상태가 되어 80%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 밖 의 사 항

32. (계약자 대출)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 ①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3. (계약자배당금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4.(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5.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6.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0507-10703093-13393009

37.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38. (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9.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0.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1.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42.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0507-10703093-13393009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특별약관

0507-10703093-13393009
0507-10703093-13393009
0507-10703093-13393009

1. 일 반 상 해 의 료 비 담 보 특 별 약 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일반상해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위 ①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①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일반상해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⑧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⑩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0507-10703093-13393009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⑪ 위 ⑩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0507-10703093-13393009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② 해당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발행하는 치료비 지불 영수증 원본

③ 해당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청구 명세서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4. **(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1.의 1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20. 및 21.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2. 일 반 상 해 임 시 생 활 비 담 보 특 별 약 관

0507-10703093-13393009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일당액을 일반상해 임시생활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⑧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⑩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⑪ 위 ⑩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0507-10703093-13393009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0507-10703093-13393009

[3] 피보험자가 도로 교통법 제 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때.

3. (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31.의 [1]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20. 및 21.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

3.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해(50%이상)시 생활자금 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 라 하며, 사망은 제외합니다) 하여 【별표1】 (후유장해등급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아래의 생활자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후유장해 지급율	생활자금
50%이상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후부터 10년간 매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 지급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 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0507-10703093-13393009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3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합니다.

4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1 내지 3을 적용합니다.

5 위 1의 생활자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6.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5.에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 및 아래에 정한 행위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도로 교통법 제 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때.

3. (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위 1.에 정한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해(50%이상)로 생활자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해(50%이상)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이상이거나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보통약관 3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20.및 21.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4.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해(80%이상)시 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0507-10703093-13393009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 라 하며, 사망은 제외합니다) 하여 【별표1】 (후유장해등급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후유장해 지급율	생활자금
80%이상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후부터 10년간 매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3% 지급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 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1】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 의 구분에 준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③을 적용합니다.

⑤ 위 ①의 생활자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6.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5.에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 및 아래에 정한 행위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도로 교통법 제 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때.

3.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위 1.에 정한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해(80%이상)로 생활자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 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보통약관 3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0507-10703093-13393009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20.및 21.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5.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해(100%)시 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 라 하며, 사망은 제외합니다) 하여 【별표1】 (후유장해등급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이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한 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후유장해 지급율	생활자금
100%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후부터 10년간 매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3% 지급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 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1】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 의 구분에 준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③을 적용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⑤ 위 ①의 생활자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6.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5.에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 및 아래에 정한 행위

0507-10703093-13393009

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도로 교통법 제 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때.

0507-10703093-13393009

3. (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위 1.에 정한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해(100%)로 생활자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 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보통약관 3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20.및 21.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6.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 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아래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 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 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①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을 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 잡이는 제외함)를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0507-10703093-13393009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 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①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함)
②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단, 업무 출장 및 업무 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5.에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 및 아래에 정한 행위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도로 교통법 제 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때.

3.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후유장해 지급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사망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3 위 1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①피보험자의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별표1】(후유장해 등급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적용합니다.
② 위 ①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

0507-10703093-13393009

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구분에 준하여 지급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③을 적용하고 그 지급율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4.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가 생긴때에는 4.(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사망보험금)의[3]을 적용한 후유장해지급율이 80%미만인 경우 그 지급율을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5.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사망보험금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은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사망 보험가입금액 또는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80%이상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80% 미만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6. (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이상이거나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 됩니다.

[2] 위 [1]의 경우 피보험자가 80%이상 후유장해 상태가 되어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특정여가 활동 중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보통약관 31.의 [1]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0507-10703093-133993009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20. 및 21.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7.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상해에 기인한 사망 포함)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함)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 (주택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나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⑥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 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0507-10703093-13393009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

0507-10703093-13393009

인하는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에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 제외),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⑪ 폭력으로 기인하는 배상책임.

3. (지급보험금)

[1]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2] 위 [1]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1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 [1]의 ①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② 위 [1]의 ②, ③, ④ 및 ⑤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위 [1]의 ①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위 [1]의 ④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위 [1]의 ①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0507-10703093-13393009

4. (손해보상 후의 계약)

보통약관 31.의 ①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새참 상해 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20. 및 21.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8. 질병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입원급여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④ 위 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에 의한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위 ①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위 1.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⑤ 정상의 건강상태로서 아무런 객관적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정규 또는 기타의 신체검사 및 의사가 불구로 진단한 경우를 제외한 검진 또는 X선 검사

⑥ 미용 또는 성형수술

⑦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⑧ 모든 정신질환 및 신경질환 또는 안정요법

⑨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⑩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⑪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⑫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⑬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⑭ 위 ⑬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보통약관과의 관계)

0507-10703093-13393009

보통약관 31.의 ①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새참 상해 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20. 및 21.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용어풀이>

① 의사 :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병원 및 의원 : 다음의 각 조건을 구비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가. 병원 및 의원면허가 있을 것

나. 부상자 또는 병자를 입원환자로서 수용하여 치료함을 기본으로 할 것

다. 등록 또는 유자격 간호사가 하루 24시간 간호할 수 있을 것

라. 항상 1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할 것

마. 진단 및 수술을 위한 상당한 시설을 갖출 것

바. 진료소, 간호센터, 요양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아닐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코올중독자 또는 마약중독자 치료소가 아닌 기관일 것

9.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별표4】 (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③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에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질병사망보험금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② 위 ①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3 위 1의 "장해상태"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⑥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⑦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⑧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⑨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2.(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소멸됩니다.

2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31.의 1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23.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10. 단체취급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계약」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① 제1종 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② 제2종 단체(법정단체) : 제1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등의 단체

③ 제3종 단체(규약단체) : 제1종 및 제2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

0507-10703093-133993009

에 관한 주요 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보험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위 1.의 ②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3.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위 2.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위 ①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① 피보험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해약환급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② 피보험자단체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로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③ 계약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0507-10703093-13393009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적용보험료)

① 보험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위 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위 ①을 적용합니다.

③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별 위험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 적용하거나 단체의 평균연령 또는 평균급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②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7. (적용 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0507-10703093-13393009

1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0507-10703093-13393009

1.(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② 위 ①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1.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3.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2.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 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로 하여 초회보험료(부활시 연체보험료 및 부활 후 최초납입보험료를 포함합니다)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0507-10703093-13393009

3. (사고카드의 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 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3. 전자거래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우리회사(이하 「회사」 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영업장(이하 「사이버몰」 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무배당 새참 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2.(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의 ①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보험계약 청약서(이하 「청약서」 라 합니다), 보험약관 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 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가 위 ①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 (전자서명의 효력) 회사는 보통약관에 7.(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의 ①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보험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 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 등이 직접 서명날인 한 것으로 봅니다.

4. (보험료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 이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2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지정계좌로부터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3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쇠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보험 계약자가 사고 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 개시일로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5 위 4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0507-10703093-13393009
0507-10703093-13393009
0507-10703093-13393009

【별표1】

후 유 장 해 등 급 표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5

0507-10703093-13393009

후유장해의 종류	자급율(%)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5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0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4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20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7

0507-10703093-13393009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 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8
5)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75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0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25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10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42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0507-10703093-13393009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1. 정신· 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00
3)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75
4)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0
5)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25
6)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용 어 풀 이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이상 측만변형 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0507-10703093-13393009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7. 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 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 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 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 발가락 이외의 손· 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0507-10703093-13393009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0507-10703093-13393009
0507-10703093-13393009
0507-10703093-13393009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0507-10703093-13393009

1. 기본계약

1) 보장부분 : 해약환급금 없음

2) 적립부분

(월납 : 적립보험료 1원)

보험기간	경과년수	해약환급금
5년	1년	7.0437750원
	2년	18.9697786원
	3년	29.7358216원
	4년	42.2737527원
	5년	54.7613653원

주) 상기 금액은 약관 대출이율이 9.5%일 때 산출한 금액임.

2. 선택계약 없음

0507-10703093-13393009

0507-10703093-13393009

【 별표 3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 내지 제20조의 3(끼어들기의 금지)또는 제56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 제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국제운전 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중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0507-10703093-13393009

9.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0507-10703093-13393009

【별표 4】

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 ~ B99
Ⅱ. 신생물	C00 ~ D48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장애	D50 ~ D89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E00 ~ E90
Ⅵ. 신경계의 질환	G00 ~ G99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 ~ H59
Ⅷ.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H60 ~ H95
Ⅸ. 순환기계의 질환	I00 ~ I99
Ⅹ. 호흡기계의 질환	J00 ~ J99
ⅩⅠ. 소화기계의 질환	K00 ~ K93
ⅩⅡ.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 ~ L99
ⅩⅢ.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 ~ M99
ⅩⅣ.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N00 ~ N99
ⅩⅤ. 임신. 출산 및 산욕	O00 ~ O99
ⅩⅥ.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P00 ~ P96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R00 ~ R99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0507-10703093-13393009